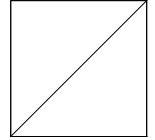


공개



의안번호	제 4 호	심 의 사 향
심 의 연 월 일	2016. 6. 30. (제 13 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세칙 개정(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제 출 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제출 연월일	2016. 6. 30.

1. 의결주문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세칙 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 국방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전문적인 사전심의를 수행하기 위해 국방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국방전문위원회』 신설(제12조제10호)
 - 국방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 융·복합화 촉진 및 다른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국방전문위원회를 설치

4. 참고 사항

- 관계부처 의견수렴('16.5.4~16)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세칙 개정(안)

2016. 6. 30.

미래창조과학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세칙 개정(안)

개정 2016. 6. 3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와 심의회에 두는 운영위원회·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실무위원회·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기초연구진흥협의회(이하 "산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심의회 회의의 운영

제2조(심의회 회의) ① 심의회 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심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회 회의는 영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법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위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 소속기관의 정무직 공무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출석한 자는 의결권을 가진다.

④ 심의회 회의의 간사위원은 법 제9조의2제6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된다. 다만, 간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이 그 직을 대행할 수 있다.

제3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 간사위원의 사무처리를 보좌할 간사를 두고,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개회·정회와 폐회의 일시
2. 회의장소
3. 출석위원·결석위원 및 참여자의 성명
4. 회의 주요내용 및 결과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안전의 구분) ① 심의회에 상정할 안전은 심의안전과 보고안전으로 구분한다.

② 심의안전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심의회의 심의에 부칠 것을 요구하여 해당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

1.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 기본계획과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에 관한 사항
5. 매년도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예산의 배분 및 조정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6. 중·장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9. 성장동력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0. 문화·관광산업, 부품소재 및 공정혁신 분야 등에서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11.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12. 지역기술혁신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13. 기술혁신을 위한 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14. 국가표준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15. 과학기술을 활용한 경제적·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관한 사항
16.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1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18. 과학기술분야 연구 안전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19.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20.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21. 그 밖에 심의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보고안전은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안전으로 법령에 따라 심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나 심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안전,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 또는 관계행정기관에 보고를 요청한 안전 등을 말한다.

제4조의2(운영위원회에 대한 위임) 간사위원은 심의회에 상정되는 안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위임할 수 있다.

1. 심의회에서 의결된 중장기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
3. 매년 반복적으로 수립·보고되는 안전으로서 중요하지 않은 사항
4. 특정분야의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제5조(안전 제출) ① 안전은 심의회 위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하고, 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안전은 간사위원이 제출한다.

② 안전은 제출되기 전에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은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지 않고 심의회 안전으로 상정될 수 있다.

1. 영 제13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
2.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재상정되는 안건
3.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
4. 기타 위원장이 인정하는 안건

③ 위원장, 심의회 위원, 운영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상정하고자 하는 안건을 심의회 개최 7일전까지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 등에서 사전에 심의·검토된 내용 및 이를 반영한 안건을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간사위원과 협의하여 제출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안건 의결) ① 안건은 영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보고 안건의 경우 접수한 것으로 본다).

1. 원안의결 : 상정안건을 수정 없이 원안으로 의결하는 경우
2. 수정의결 : 상정안건의 일부 내용을 회의 중에 직접 수정한 후 의결하는 경우
3. 조정 후 의결 : 안건을 상정한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위원들의 심의의견에 대하여 추가 검토하여 안건을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의결하는 경우
4. 재상정 : 안건 내용에 대해 위원간의 이견이 크고 쟁점이 쉽게 조정되지 못하여 추가적 검토와 협의·조정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조정 후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 안건제출자는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검토하여 보완한 안건(미반영시 그 사유)을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간사위원은 제2항에 따라 안건제출자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최종 확정 또는 재상정 등 안건의 처리방법을 결정하고, 위원들에게 알린다. 최종 확정된 안건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상정" 안건에 대하여 산하위원회에 추가적인 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제7조(서면의결) ①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의결일자를 정하여 사전에 심의회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면의결은 제2항에 따른 서면의결일자에 심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④ 서면의결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며,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서면의결 결과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특정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의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회 의결로 당해 위원에 대한 제척을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등) ① 국무총리인 위원장은 법 제9조2제2항2호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거나 고의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타당한 이유 없이 심의회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해당 위원의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질병, 사고 등으로 심의회 활동이 어려운 경우를 포함하여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위원이 해촉된 경우에는 대통령이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장 산하위원회 회의의 운영

제10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하지 못하는 때에는 간사위원이 그 직을 대행할 수 있다.

③ 영 제10조제2항제1호의 위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 소속기관의 직하위(直下位) 직급의 공무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출석한 자는 의결권을 가진다.

제11조(운영위원회 안건) ①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심의회 사전 검토를 위한 안건(이하 "본회의 사전 검토안건"이라 한다)과 심의안건으로 구분한다.

② 본회의 사전 검토안건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심의회 심의안건과 제4조제3항에 따른 심의회 보고안건을 말한다.

③ 심의안건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가 운영위원회에 그 심의를 위임하는 안건을 말한다.

제12조(전문위원회 구성) 영 제12조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두는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조정전문위원회
2. 평가전문위원회

3. 공공·우주전문위원회
4. 에너지·환경전문위원회
5. ICT·융합전문위원회
6. 기계·소재전문위원회
7. 생명·의료전문위원회
8. 기초·기반전문위원회
9. 중소기업전문위원회
10. 국방전문위원회

제13조(특별위원회 구성) 영 13조에 따른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2.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
3. 공과대학혁신특별위원회
4.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
5. 전문기관효율화특별위원회
6. 바이오특별위원회

제4장 보 칙

제14조(실무사항) ① 이 운영세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심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② 이 운영세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산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운영에 준용하여 산하위원회의 각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운영세칙 개정) 이 운영세칙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

부 칙

이 운영세칙은 심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면의결서

- 회의명 :
- 서면의결일자 :
- 안건별 의결내용

안건명	찬성 또는 반대	의견

상정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 (서명)

국가과학기술심의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아니오 ()
2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아니오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허가·면허·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아니오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용역·계약 또는 연구·논문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아니오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예 ()	아니오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아니오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아니오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후보자가 본인의 해당항목을 표시**하되, 고도의 직무윤리가 요구되는 위원회는 후보자 가족의 해당항목까지 범위 확대

서 약 서

직위 : ○○○○위원회 위원(장)

성명 : ○ ○ ○

상기 본인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 ○ ○ (서명)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p>제12조(전문위원회 구성) 영 제12조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전의 검토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두는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책조정전문위원회 2. 평가전문위원회 3. 공공·우주전문위원회 4. 에너지·환경전문위원회 5. ICT·융합전문위원회 6. 기계·소재전문위원회 7. 생명·의료전문위원회 8. 기초·기반전문위원회 9. 중소기업전문위원회 	<p>제12조(전문위원회 구성) 영 제12조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전의 검토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두는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책조정전문위원회 2. 평가전문위원회 3. 공공·우주전문위원회 4. 에너지·환경전문위원회 5. ICT·융합전문위원회 6. 기계·소재전문위원회 7. 생명·의료전문위원회 8. 기초·기반전문위원회 9. 중소기업전문위원회 10. <u>국방전문위원회</u> 	<p>국방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 융·복합화 촉진 및 다른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등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국방전문위원회를 설치</p>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전략본부
과학기술정책관 과학기술정책조정과

담당자

김기제 사무관

연락처

전 화 : 02) 2110-2557
E-mail : mussac@korea.kr